

용인시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폐지규정을 이에 발령한다.

용 인 시 장

2016년 2월 29일

용인시훈령 제394호

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폐지규정

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」에 따른 처분, 절차,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